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7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차규근 · 강경숙 · 신장식
김재원 · 서왕진 · 김선민
황운하 · 이해민 · 정춘생
박은정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채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납자에 대하여 채납 원인·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채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채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채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 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채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채납자 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납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채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채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채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

특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7(고액·상습채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상습채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6조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채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채납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4조의2(체납자 실태확인) ①</u> <u>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u> <u>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u> <u>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u> <u>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u> <u>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u> <u>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u> <u>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u> <u>무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u> <u>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u> <u>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u> <u>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u> <u>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u> <u>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u> <u>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u> <u>부계획 확인</u> <u>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u> <u>는 방문 상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u> <u>는 단순 사실행위</u> <p><u>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u></p>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6조의7(고액·상습채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 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상습채납자”라 한

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 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상습채납자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116조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u><신 설></u></p>	<p>2. <u>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u></p>
<p><u><신 설></u></p>	<p>3. <u>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u></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